

부여사랑노인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부여사랑노인요양원(이하 “시설이라 한다) 입소자 및 종사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책임자
 - 가. 책임자 : 시설장 박관순
 - 나. 운영담당자 : 박상신 / 권경아 (2월달부터 위임)
 - 다. 모니터링담당자 : 박상신 / 권경아 (2월달부터 위임)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영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담당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① 시설 내 CCTV는 총 49대 설치하며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침실 27대 (침실 각 1대), 공동침터 11대
2. 현관 2대, 물리치료실 1대, 프로그램실 2대, 식당 2대, 세탁실 2대
3. 외부공간 2대(주차장)

②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원장실 및 사무실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③ 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3. CCTV 영상정보 보관용량 : 60일분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프레임

④ 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각 침실은 침실별로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다.(별지2호 서식)

1. 침실, 공동침터
2. 현관,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세탁실
3. 외부공간 (주차장)

제7조(CCTV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① 시설은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CCTV 안내판을 출입구 및 주변경계부 등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 1)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목적
- 2)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장소,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 3) 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② CCTV 안내판의 규격은 A4(가로 21cm 이상 세로 29.5cm) 크기 이상으로 한다.

③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 상시 촬영 및 상시 녹화한다.

④ 녹화된 영상정보는 60일간 보관한다.

제8조(영상정보 저장장치 또는 기기, 열람 장소, 삭제주기) ① 영상정보 저장장치 또는 기기, 열람 장소, 삭제주기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원장실 및 사무실에 있는 DVR
2.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원장실 및 사무실
3. 영상정보 삭제주기는 60일간 보관 후 자동 삭제 처리한다.

제3장 영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9조(영상정보 열람 가능사유) ①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제10조(영상정보 열람 요청시 제출서류 등) ①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열람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3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 열람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자의 금지행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CTV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3. 장기요양기관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는 행위

제12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책임자에게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영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 장소를 출입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영상정보 접근권한은 시설 책임자 및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영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영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CCTV 운영·관리대장에 따라 주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영상정보 관리 교육)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수급자, 직원 등의 개인정보 관련자료가 유출, 유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시설의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영상정보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별지4호 서식)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2025. 01 . 01

부여사랑노인요양원